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건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번 호 2019-107호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학교장
재 결 일 자 2019. 10. 14.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9. 6.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학년 재학생으로 평소 피해학생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하였으나, 피해학생의 언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청구인 외 8명의 학생이 2019. 4월 셋째 주 일과시간부터

로 청구인 외 8명의 학생이 2019. 4월 셋째 주 일과시간부터 피해학생을 따돌리는 말과 행동 등을 하여, 피청구인은 2019. 6. 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함.)를 개최하여, 2019. 6. 19.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처분 조치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한다.

- 가. 이 사건 자치위원회 구성 및 선출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의문스럽고, 피청구인은 피해학생 어머니가 제기한 주장만으로, 심도 있는 조사 없이 청구인 외 9명의 학생을 가해학생으로 지목하여 진술서를 징구한 바, 이는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여러 학생이 “실패, 실패”라는 말은 오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가해학생들에게 유도심문을 하였고, 피해학생 스스로 불편함을 느껴 외면하고, 등교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해학생들이 사과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으며, 등교 후에는 이미 학폭위 관련 소문이 무성하여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 다. 2017년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동급생 학생을 비방하고 욕했다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아 이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판결이 있으며, 승합차 내에서 피해학생과 11반 다른 학생이 동승하지 않아 피해학생과 같이 안 다니겠다는 말을 한 것이고, 이 발언이 피해학생에게 전달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따돌림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라.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이 사안을 생활안전부로 접수했다고 하였으나, 2019. 5. 21. 청구인의 아버지가 학교에 방문하였을 때 담임교사는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만일 2019. 5월 초부터 담임교사가 사안을 인지하였다고 한다면, 2019. 5. 17. 피해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학생들 간의 조율 또는 학부모에게 사안을 전달하고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자치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성되었고, 위원장 및 위원 과반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청구인 측에도 동일하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진술내용, 진술서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자치위원회에서 사건의 종합적 맥락을 보고 받고 반영하여 처분을 내린 점, 절차적 하자가 없었던 점, 청구인이 사안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반성정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한 정당한 처분이다.
- 나. 또한 피해학생의 주장만으로 사안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관련학생들의 진술서를 수집하였으며, 갈취, 폭행, 성폭력 등의 중대 사안이 아니므로 선부른 개입보다 자치위원회에서 피해 및 관련 학생들의 허심 탄회한 발언을 통해 위원들의 공정한 판단을 이끌어내자는 것이 전담 기구의 의견이었다.
- 다. 자치위원회는 피해관련 학생 및 관련학생들의 진술서, 발언 내용을 종합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에 따라 위원별 기본

판단 요소를 적용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이렇게 산정된 점수는 다수 결의 원칙에 따라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 라. 급식소 앞에서 ‘실패, 실패’라는 발언의 사실관계는 양측 주장이 상이하여 발언 이후의 상황에 초점을 두었으며, 청구인을 비롯한 8명의 학생이 평소처럼 자신들과 식사하지 않는 피해학생에 대한 의구심을 갖거나 왜 식사하지 않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다른 학생이 이 상황에 대해 물었을 때 피해학생과 같이 다니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실패, 실패’ 발언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 마. 승합차에서의 청구인의 발언은 다른 학생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까지 청구인의 발언을 알게 되었으며, 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피해학생이 겪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청구인은 크게 반성하지 않아 가해학생의 반성정도에서 1점을 받았다.
- 바. 2019. 5. 17. 학교폭력으로 사안이 접수된 후, 담임교사는 관련자로 처리되어 사안에 직접 개입할 수 없고, 학교폭력 사안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임교사가 안내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아버지를 해당부서인 생활안전부로 안내하였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판 단

가. 학교 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1. “학교폭력”이란 학교内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内外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면들, 자치위원회 회의록, 구술심리결과, 관련 학생들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포함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적법절차 위반 및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피청구인의 자치위원회 선출 및 구성 과정을 살펴본 결과, 자치위원회 선출 및 구성 절차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자치위원회에서는 반성정도 높음(1점)으로 평가하였고, 이는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에 해당한다. 제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므로,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V.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